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9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이만희·윤재옥·박덕흠

이명수 · 신원식 · 권명호

유두혂·박대수· 김석기

이 용・지성호・한무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경우 세금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 금액은 그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간 유지해오면서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 바,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

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대통령령"을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7천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 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1억2천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u>대통령령</u> 으로	<u>직전년도 소비자</u>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
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의무의 면제) 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	
가의 합계액이 <u>3천만원</u> 미만이	<u>7천200만원</u>
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	

② ~ ④ (현행과 같음)